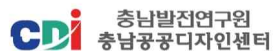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안)

2014. 12



목 차

1. 가이드라인 개요	
1.1 배경 및 목적	3
1.2 방법 및 내용	3
1.3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4
2.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2.1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5
2.2 활용 및 방법	6
2.3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지침	6
2.4 적용지역	7
2.5 지역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8
2.6 가이드라인 매뉴얼	17
3. 가이드라인 운용방안	
3.1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51
3.2 유지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	53
3.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55
3.4 옥외광고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61
■ 부록.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64
■ 참고 및 인용문헌	79

1. 가이드라인 개요

1.1 배경 및 목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조례로는 충청남도의 각 지역에 밀집되어 날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들과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혼란스러운 시각적 요소들을 개선하기 어려움
- 충청남도의 각 지역특성, 건축물, 도로환경 등 공간적·시각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시기준이 제시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함.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수립을 위해 법령, 지침 등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자 함
-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유관 기관 및 광고주, 제작자들이 활용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1.2 방법 및 내용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법령 및 지침, 조례등과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충청남도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광역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함
- 상위계획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상업지역 : 공간 또는 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 한다.
 - 주거지역·공업지역 : 주거, 생활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녹지지역·비도시지역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한 광고물의 수량, 규모등을 최소화 한다.
 - 특성화지역 : 광고물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 구현 및 미관개선을 목표로 한다.
- 옥외광고물 및 표시 유형을 12가지로 구분하고 사례와 적용 방법등을 제시함

1.3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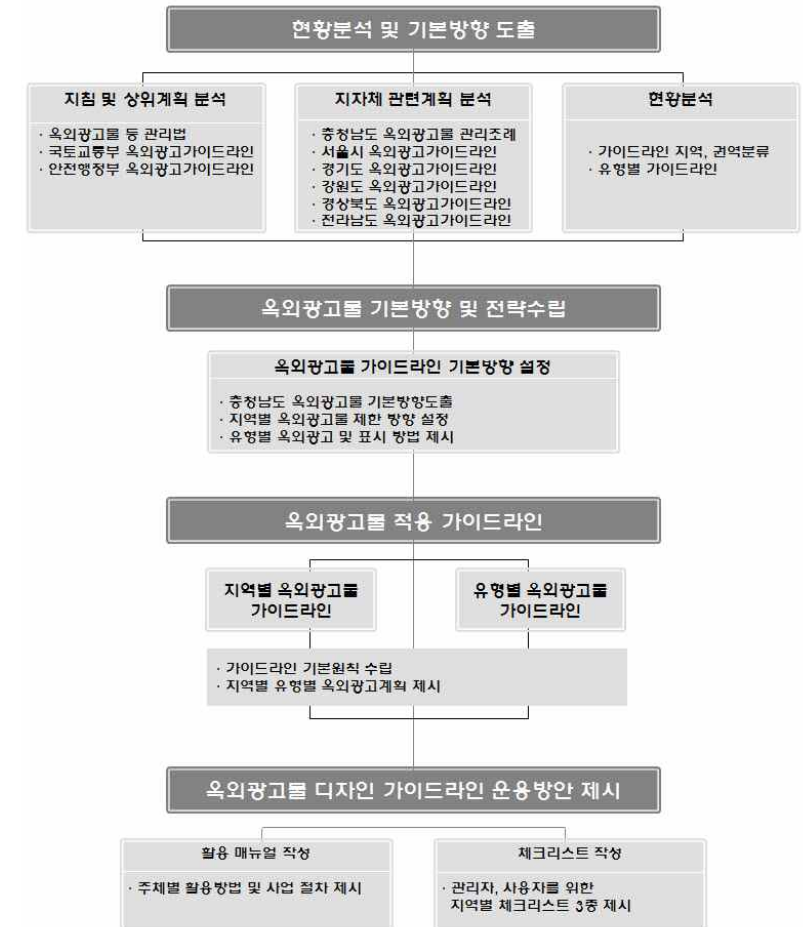


표1.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2.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2.1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기능성 측면

- 공간의 기능에 적합한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한다.
- 간판의 표기되는 내용은 간결하고 가독성을 높게 설계한다.

○ 공공성 측면

- 지역의 정체성과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을 계획한다.
- 건축물과 통일감 있는 옥외광고물을 디자인 한다.

○ 심미성 측면

- 다양하고 개성있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도시 경관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한다.
-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상가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림1. 가이드라인 3원칙

2.2 활용 및 방법

- 가이드라인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공무원과 건축주, 옥외광고종사자, 광고주 등이 주체가 되어 옥외광고 계획 시 활용
- 옥외광고물이 설치되는 구역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적용되며, 심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활용

활용주체	활용방법
도, 시·군 담당자	• 공공사업 추진시 사업내용 검토에 활용 • 설계자(옥외광고종사자)에 설계 전 가이드라인 적용 요청 및 평가 • 체크리스트 적용 설계결과보고서 요구 및 관리 • 주민교육에 활용
건축주	• 건축설계시 옥외광고물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활용
광고주	• 신규업종 계획시 옥외광고물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활용
설계자 (옥외광고종사자)	• 옥외광고물 계획시 설계기준으로 활용 • 옥외광고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기준 확인
심의 및 평가위원	• 옥외광고물심의 등 관련사업 심의기준으로 활용

표4.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 및 방법

2.3 가이드라인 관련 주요지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조례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제한되는 규제와 방향을 제시함

구분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한 제한 성격의 기본적인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 설치 광고물의 집행 또는 관리에 대한 관리법의 하위 규정
옥외광고물 시, 도 조례	• 각 시·도 별로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른 관리조례

표3.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2.4 적용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분류의 기준과 국토교통부 옥외광고가이드라인의 권역분류 준용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비도시지역, 특성화지역으로 구분

규제	지역분류	지역특성	용도지역
완화 ^	상업지역	공간 또는 가로의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한다.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주거지역·공업지역	주거, 생활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공업지역
강화 v	녹지지역·비도시지역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한 광고물의 수량, 규모등을 최소화 한다.	•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성화지역	광고물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의 정체성 구현 및 미관개선을 목표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관지구 • 미관지구 • 관광지, 관광특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광고물등 특정구역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 및 정비시범구역

표3. 충남옥외광고가이드라인 지역분류

2.5 지역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3개 지역별 및 특성화지역으로 구분하고 간판유형을 12가지로 제시

적용지역 간판유형	상업지역	주거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특성화 지역
	규제 완화	<---->		규제 강화
간판총수량(총량제)	1업소 3간판	1업소 2간판	1업소 1간판	별도지침
가로형간판	3층이하	2층이하		
세로형간판	1층 주 출입구(건물명)		제한	
돌출간판	5층이하	3층이하	1층이하	
지주이용간판	업소당 1개 건물별 1개			
창문이용광고물	2층이하 면적의 1/4	1층이하 면적의 1/4		
옥상간판	3층이상	제한		
현수막이용광고물	지정계시대에 한하여 허용		제한	
공연간판	지면으로부터 3m이상	제한		
에드빌의 표시	건물옥상으로 부터 30m 이상	제한		
벽보의 표시	지정계시판에 한함		제한	
전단의 표시	배부함을 통합		제한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제한		

표6. 충남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지역별 유형별 가이드라인

• 기타 종류의 간판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1) 상업지역

구분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공통	수량	• 3개 이하(최대 4개이하) • 곡각지점은 1개 추가한다. •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돌출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 금지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 금지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
	전기사용 표시방법	• 주거환경, 축사, 농작물 재배 지역등 피해예상지역 금지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장애 예상지역 금지
	안전점검 대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현수막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종류별	가로형 간판	• 1업소 1간판 •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 가로길이는 해당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한다 • 곡각지점 및 건물 앞면 및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 4층 이상의 건물의 가장 높은층에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 부착가능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주 출입구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한다. • 4층이상의 건물은 입체형 간판을 가로3m×세로 건물의 1/2 이내로 한다. • 판류형의 경우 가로0.6m×세로2m 이내로 한다.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3m 이내로 한다.
	돌출간판	• 5층이하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로1.2m, 세로30m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0.5m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폭은 0.3m 이내로 한다.

	지주이용 간판	1. 건물부지안에 설치 • 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 높이는 10m 이내로 한다. • 1면의 면적은 10㎡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40㎡ 초과할 수 없다. (공통)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건물부지 밖에 설치 • 2개 이상의 업소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1개 추가 •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개이상의 업소간판은 1면의 면적 6㎡ 이내로, 3개업소 이하는 1면의 면적 3㎡이하로 한다. • 1개업소 간판의 가로1.5m이내, 세로0.5m 이내로 한다. • 보도경계로부터0.5m이상으로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 천, 종이, 비닐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 및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을 활용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창문이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한다.
	옥상간판	• 3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현수막 표시	• 벽면이용, 지정계시대이용, 지주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한다. • 적색류와 흑색류의 바탕색은 금지한다. • 게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지정계시대는 높이 8m, 가로10m 이내로 한다. • 지주를 이용할 수 있다.
	공연간판	•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폭의 1/3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0.4m 이내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이어야 한다.

	에드벌룬의 표시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설치한다. - 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m 이상 50미터 이내로 한다. - 에드벌룬의 직경은 5m 이내로 하고, 크기 7m와 폭 1.2m 이내로 한다.
	벽보의 표시	-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로0.4m, 세로0.55m 이내로 한다.
	전단의 표시	- 직접나누어 누거나 건물주출입구등에 배부함을 통해 배부한다. - 가로0.3m, 세로 0.4m 이내로 한다.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 도로횡단구조는 도로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어야 한다. - 폭이 20m 이상인도로는 이를 횡단하지 못한다.

표7. 상업 지역 가이드라인

(2) 주거지역 · 공업지역

구분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공통	수량	2개 이하(최대 4개이하) - 곡각지점은 1개 추가한다.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돌출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 금지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 금지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
	전기사용 표시방법	금지한다.
	안전점검 대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현수막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종류별	가로형 간판	1업소 1간판 2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 가로길이는 해당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한다 - 곡각지점 및 건물 앞면 및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주 출입구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한다. - 판류형의 경우 가로0.6m×세로2m 이내로 한다.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3m 이내로 한다.
	돌출간판	3층 이하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로1.2m, 세로20m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0.5m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폭은 0.3m 이내로 한다.
	지주이용 간판	- 건물부지안에 설치 - 높이는 5m 이내로 한다. 1면의 면적은 5㎡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20㎡ 초과할 수 없다. (공통)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건물부지 밖에 설치

		• 2개 이상의 업소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1개 추가 •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개이상의 업소간판은 1면의 면적 6㎡ 이내로, 3개업소 이하는 1면의 면적 3㎡이하로 한다. • 1개업소 간판의 가로1.5m이내, 세로0.5m 이내로 한다. • 보도경계로부터 1m이상으로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 천, 종이, 비닐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 및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을 활용하는 경우, 1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한다.
	옥상간판	금지한다.
	현수막 표시	•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한다. • 적색류와 흑색류의 바탕색은 금지한다. • 게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지정게시대는 높이 8m, 가로10m 이내로 한다. • 지주를 이용할 수 있다.
	공연간판	금지한다.
	애드벌룬의 표시	금지한다.
	벽보의 표시	•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로0.4m, 세로0.55m 이내로 한다.
	전단의 표시	• 직접나누어 누거나 건물주출입구등에 배부함을 통해 배부한다. • 가로0.3m, 세로 0.4m 이내로 한다.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	금지한다.

표8. 주거·공업 지역 가이드라인

(3)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구분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공 통	수량	• 1개 이하(최대 4개이하) • 곡각지점은 1개 추가한다. •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돌출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 금지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 금지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
	전기사용 표시방법	금지한다.
	안전점검 대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현수막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종 류 별	가로형 간판	• 1업소 1간판 • 2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 가로길이는 해당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한다 • 곡각지점 및 건물 앞면 및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세로형 간판	금지한다.
	돌출간판	• 1층이하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로1.2m, 세로20m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0.5m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폭은 0.3m 이내로 한다.
	지주이용 간판	1. 건물부지안에 설치 • 높이는 5m 이내로 한다. • 1면의 면적은 5㎡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20㎡ 초과할 수 없다. (공통)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건물부지 밖에 설치 • 2개 이상의 업소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1개 추가 •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개이상의 업소간판은 1면의 면적 6㎡ 이내로, 3개업소 이하는 1면의 면적 3㎡이하로 한다. • 1개업소 간판의 가로1.5m이내, 세로0.5m 이내로 한다. -보도경계로부터 1m이상으로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 천, 종이, 비닐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 및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을 활용하는 경우, 1층 이하의 창문이용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한다.
옥상간판	금지한다.
현수막 표시	금지한다.
공연간판	금지한다.
에드빌론의 표시	금지한다.
벽보의 표시	금지한다.
전단의 표시	금지한다.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	금지한다.

표9. 녹지·비도시 지역 가이드라인

(4) 특성화지역

구분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지구단위 계획지역	• 광고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함 • 용지별로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일반가이드라인과 특화가이드라인으로 구별 함 •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함
중점경관 관리지역	•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함
경관지구	• 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함
미관지구	• 경관적, 미관적 위해가 되지 않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함
관광지, 관광특구	• 옥외광고물의 특화를 통하여 지역 및 가로의 이미지를 강화함 •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함
광고물등 특정구역	• 특정구역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표시 위치, 자재, 색깔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광고물등 자율관리지역	• 자율구역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관한 주민 협정서를 마련할 수 있다.
광고물등 정비시범지역	• 정비시범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표시 위치, 자재, 색깔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표10. 특성화 지역 가이드라인

2.6 가이드라인 매뉴얼

(1)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을 해당되며,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낮고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②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③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④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6조·제42조·제83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가. 광고물 공통 표시

① 수량

-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은 3개(최대4개) 이하로 한다.
- 꼭각지점은 1개 추가할 수 있다.
- 1면적 0.36㎡ 이하의 돌출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1면적 0.36㎡ 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일반적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를 금지한다.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를 금지한다.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한다.

③ 전기사용 표시방법

- 주거환경, 축사, 농작물 재배 지역등 피해예상지역 금지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장에 예상지역 금지

④ 안전점검 대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번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현수막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나. 광고물 종류별 표시

① 가로형 간판

- 1업소 1간판
- 가로길이는 해당업소 가로폭의 최대 10m 또는 80% 이내로 한다
- 곡각지점 및 건물 앞면 및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 4층 이상의 건물의 가장 높은층에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 부착가능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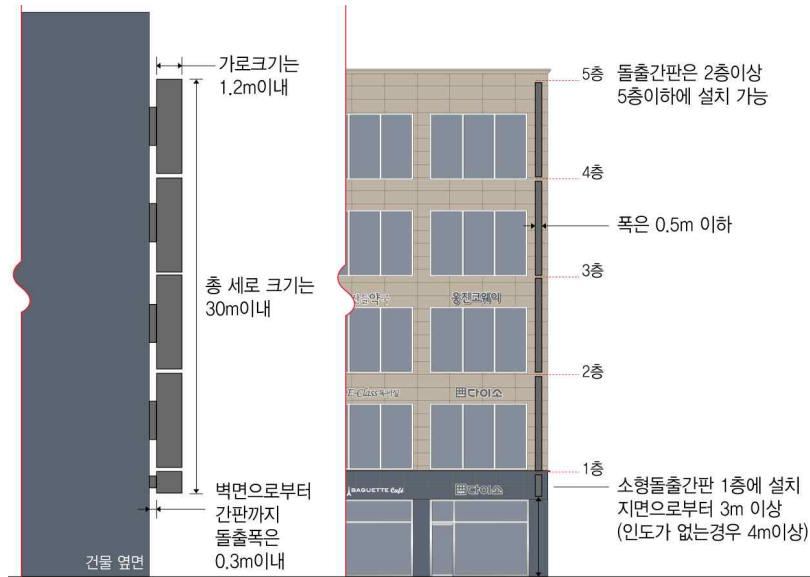
②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주 출입구에 하나의 건물명 간판을 표시한다.
- 4층이상의 건물은 입체형으로 가로3m×세로 건물의 1/2 이내로 건물명을 표시한다.
- 판류형의 경우 가로0.6m×세로2m 이내로 한다.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3m 이내로 한다.



③ 돌출간판

- 5층이하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로1.2m, 세로30m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0.5m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폭은 0.3m 이내로 한다.



④ 지주이용간판

<건물부지안에 설치>

- 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 높이는 10m 이내로 한다.
- 1면의 면적은 10㎡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40㎡ 초과할 수 없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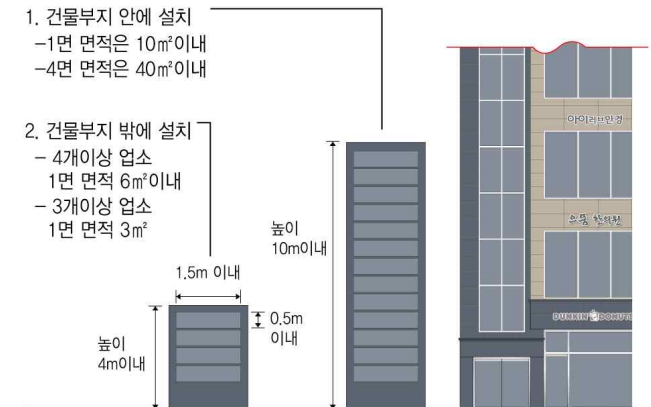
<건물부지 밖에 설치>

- 2개 이상의 업소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1개 추가
-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개이상의 업소간판은 1면의 면적 6㎡ 이내로, 3개업소 이하는 1면의 면적 3㎡이하로 한다.
- 1개업소 간판은 가로1.5m이내, 세로0.5m 이내로 한다.
- 보도경계로부터0.5m이상으로 한다.



1. 건물부지 안에 설치
 - 1면 면적은 10㎡이내
 - 4면 면적은 40㎡이내

2. 건물부지 밖에 설치
 - 4개이상 업소
1면 면적 6㎡이내
 - 3개이상 업소
1면 면적 3㎡



⑤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 2층 이하에 표시한다.
- 천, 종이, 비닐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 및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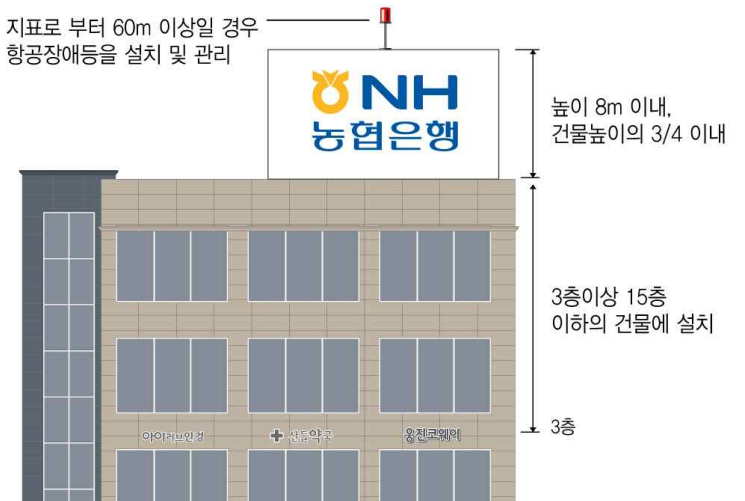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에 표시

⑥ 옥상간판

- 3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높이8m이내, 건물높이의 3/4을 초과하지 않는다.
- 지표로부터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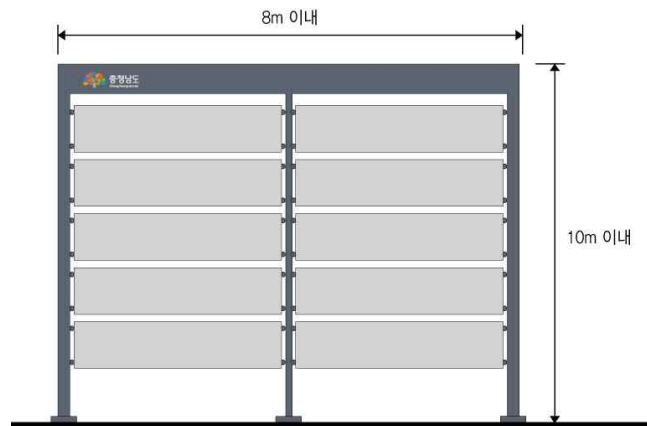


지표로부터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 및 관리



⑦ 현수막 표시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표시하며, 지주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등은 지양한다.
- 적색류와 흑색류의 바탕색은 금지한다.
- 지정게시대는 높이 8m, 가로10m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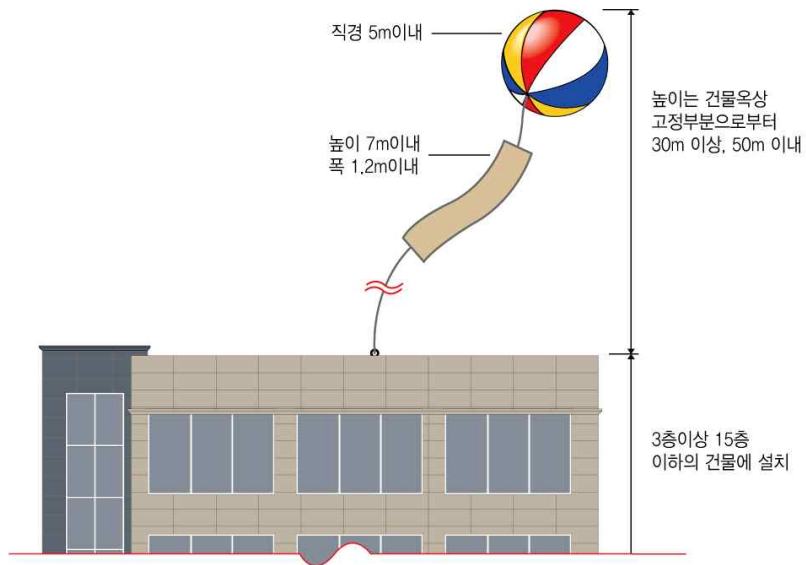
⑧ 공연간판

-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폭의 1/3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0.4m 이내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이어야 한다.



㉑ 애드벌룬의 표시

- 건물옥상에 설치한다.
- 3층이상 15층이하의 건물에 표시한다.
- 애드벌룬의 직경은 5m이내로하고, 크기7m 폭1.2m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한다.
- 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m 이상 50미터 이내로 한다.



㉒ 벽보의 표시

-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로0.4m, 세로0.55m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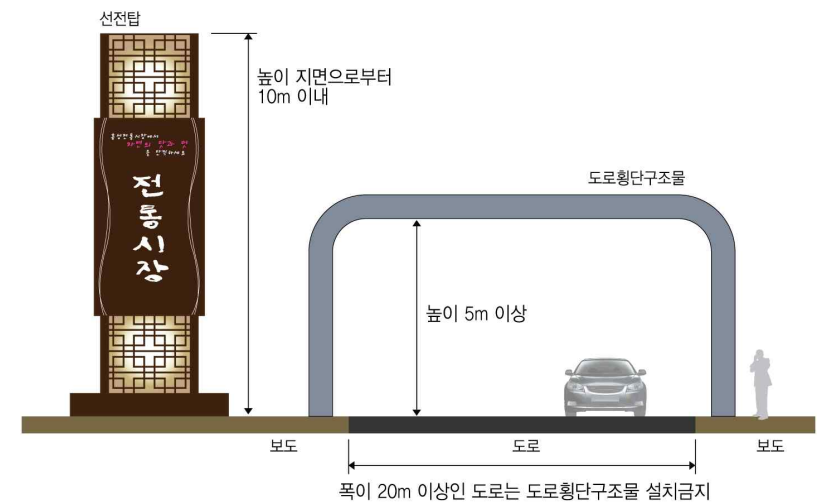
㉑ 전단의 표시

- 직접나누어 누거나 건물 주출입구등에 배부함을 통해 배부한다.
- 가로0.3m, 세로 0.4m 이내로 한다.



㉒ 선전탑 및 아치형광고물의 표시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 도로횡단구조는 도로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어야 한다.
- 폭이 20m 이상인도로는 이를 횡단하지 못한다.



(2) 주거지역·공업지역

○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 ①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②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③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6조·제77조·제7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71조·제84조·제8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전용주거 지역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을 포함하며,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높고 생활환경 보호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공업 지역

가. 광고물 공통 표시

① 수량

-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은 2개(최대4개) 이하로 한다.
- 곡각지점은 1개 추가할 수 있다.
- 1면적 0.36㎡ 이하의 돌출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1면적 0.36㎡ 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일반적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를 금지한다.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를 금지한다.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한다.

③ 전기사용 표시방법

- 금지한다.

④ 안전점검 대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현수막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나. 광고물 종류별 표시

① 가로형 간판

- 1업소 1간판
- 2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 가로길이는 해당업소 가로폭의 최대 10m 또는 80% 이내로 한다
- 곡각지점 및 건물 앞면 및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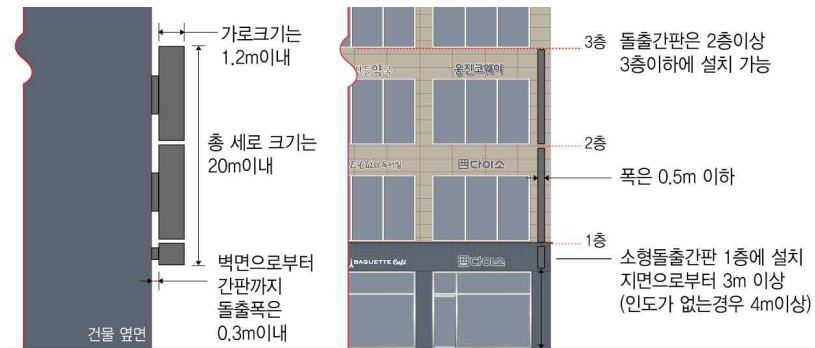
②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주 출입구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한다.
- 판류형의 경우 가로0.6m×세로2m 이내로 한다.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3m 이내로 한다.



③ 돌출간판

- 3층이하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로1.2m, 세로20m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0.5m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폭은 0.3m 이내로 한다.



④ 지주이용간판

<건물부지안에 설치>

- 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 높이는 5m 이내로 한다.
- 1면의 면적은 5㎡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20㎡ 초과할 수 없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건물부지 밖에 설치>

- 2개 이상의 업소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1개 추가
-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개 이상의 업소간판은 1면의 면적 6㎡ 이내로, 3개업소 이하는 1면의 면적 3㎡이하로 한다.
- 1개업소 간판은 가로1.5m이내, 세로0.5m 이내로 한다.
- 보도경계로부터 1m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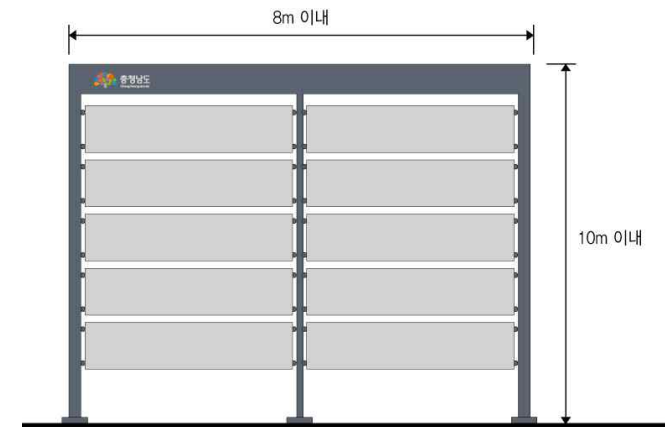
⑤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 1층 이하에 표시한다.
- 천, 종이, 비닐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 및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한다.



⑥ 현수막 표시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표시하며, 지주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등은 지양한다.
- 적색류와 흑색류의 바탕색은 금지한다.
- 지정게시대는 높이 8m, 가로10m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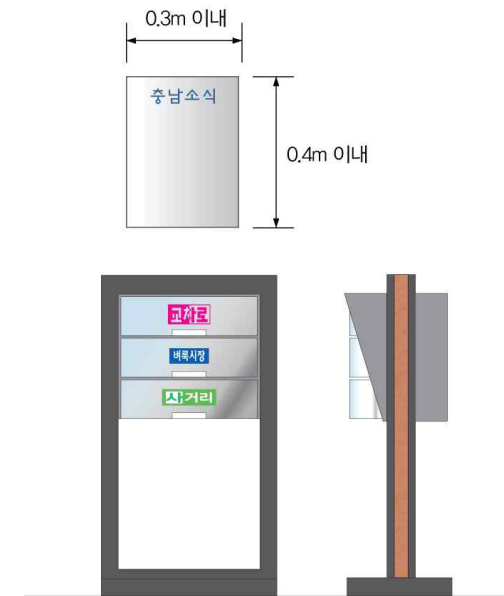
⑦ 벽보의 표시

-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로0.4m, 세로0.55m 이내로 한다.



⑧ 전단의 표시

- 직접나누어 누거나 건물 주출입구등에 배부함을 통해 배부한다.
- 가로0.3m, 세로 0.4m 이내로 한다.



⑨ 옥상간판

- 옥상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⑩ 공연간판

- 공연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⑪ 애드벌룬의 표시

- 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한다.

⑫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

-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3) 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6조·제77조·제78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제84조·제85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며,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매우높고 주요 경관 자원의 보존 및 자연환경의 보호등을 목표로 한다.



녹지지역



비도시지역

가. 광고물 공통 표시

① 수량

-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은 1개(최대4개) 이하로 한다.
- 꼭각지점은 1개 추가할 수 있다.
- 1면적 0.36㎡ 이하의 돌출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 1면적 0.36㎡ 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일반적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를 금지한다.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를 금지한다.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한다.

③ 전기사용 표시방법

-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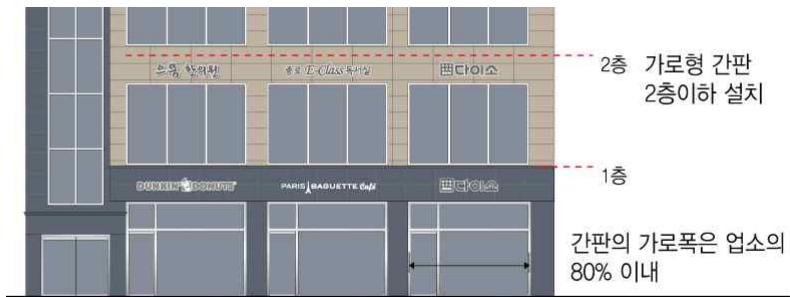
④ 안전점검 대상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나. 광고물 종류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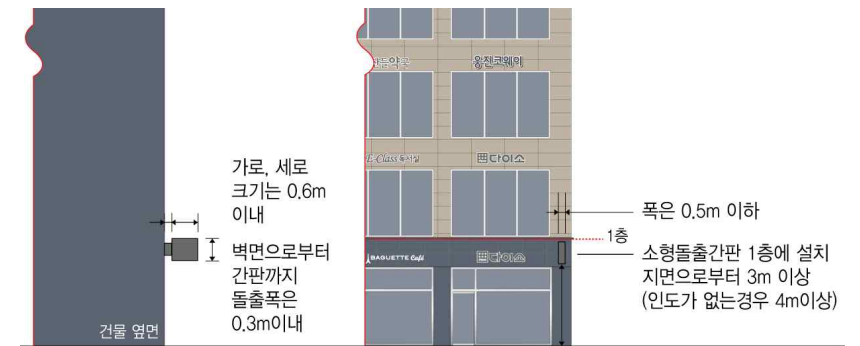
① 가로형 간판

- 1업소 1간판
- 2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 가로길이는 해당업소 가로폭의 최대 10m 또는 80% 이내로 한다
- 곡각지점 및 건물 앞면 및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 2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② 돌출간판

- 1층이하로 한다.
- 가로, 세로 크기는 0.6m 이내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로1.2m, 세로20m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0.5m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폭은 0.3m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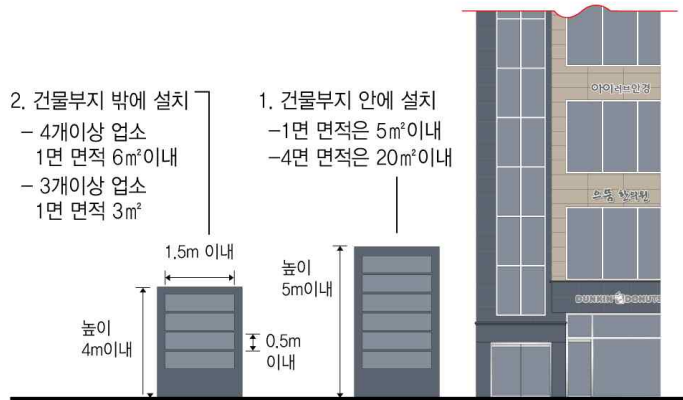
③ 지주이용간판

<건물부지안에 설치>

- 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 높이는 5m 이내로 한다.
- 1면의 면적은 5㎡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20㎡ 초과할 수 없다.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건물부지 밖에 설치>

- 2개 이상의 업소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1개 추가
-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개 이상의 업소간판은 1면의 면적 6㎡ 이내로, 3개업소 이하는 1면의 면적 3㎡이하로 한다.
- 1개업소 간판은 가로1.5m이내, 세로0.5m 이내로 한다.
- 보도경계로부터 1m이상으로 한다.



④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 1층 이하에 표시한다.
- 천, 종이, 비닐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 및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한다



⑤ 세로형 간판

- 세로형 간판을 금지한다.

⑥ 옥상간판

- 옥상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⑦ 현수막 표시

- 현수막 표시를 금지한다.

⑧ 공연간판

- 공연간판 표시를 금지한다.

⑨ 애드벌룬의 표시

- 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한다.

⑩ 벽보의 표시

- 벽보의 표시를 금지한다.

⑪ 전단의 표시

-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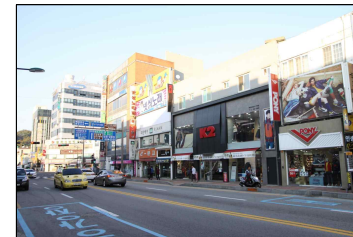
⑫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

-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4) 특성화 지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① 광고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마련한다.
- ② 용지별로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③ 일반가이드라인과 특화가이드라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
- ④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일반지역



특화지역

나. 경관지구

- ① 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②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③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관지구

다. 미관지구

- ① 경관적, 미관적 위해가 되지 않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②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③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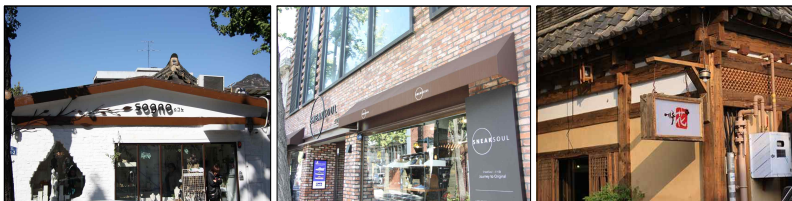
광고물의 최소화

건축물과의 조화

주변과의 조화

라. 관광지, 관광특구

- ① 옥외광고물의 특화를 통하여 지역 및 가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예시) 조명의 점등시간 규제 및 완화 등
- ②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③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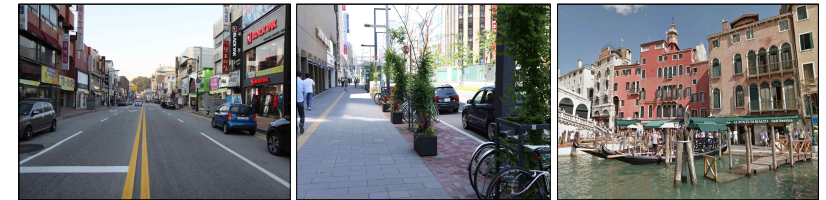
가로형간판 특화

차양막 특화

돌출간판 특화

마. 중점경관관리구역

- 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②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③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중심상업지역

보행중심지역

수변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 ① 옥외광고물의 특화를 통하여 지역 및 가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예시) 조명의 점등시간 규제 및 완화 등
- ② 광고물 종류와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③ 광고물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다.

사. 광고물등 특정구역

- 특정구역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표시위치, 자체, 색깔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 자율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관한 주민 협정서를 마련할 수 있다.

3. 가이드라인 운용방안

3.1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1) 옥외광고 정비 시범사업의 도입

○ 간판 시범사업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한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을 통한 상권의 활성화 유도, 거리공간의 유·무형 부가가치 창출 및 주민공동체의식 제고, 지역적 특징이 살아있는 표준모델 제시등을 목적으로 함

○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2005년을 전후로 도심 및 상가 밀집지역에 부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에 대한 경관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사업등 관 주도의 대대적인 간판개선사업이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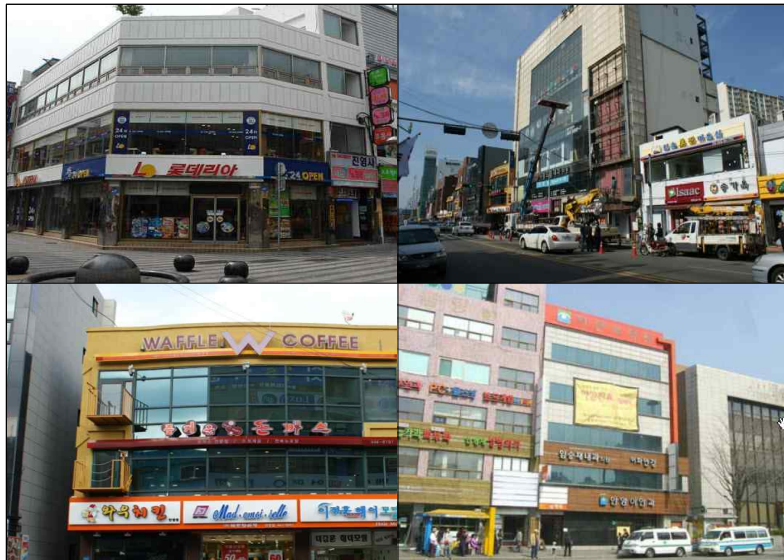


그림2. 안양시 만안구 간판정비 사례

(2) 옥외광고 정비 시범사업의 절차 (특성화 지역)

○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통한 상권의 활성화 유도, 거리공간의 유·무형 부가가치 창출 및 주민공동체의식 제고, 지역적 특징을 담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성화 구역 계획 추진을 위한

○ 추진절차

단 계	세부내용
사업계획수립	• 시·군 해당실과 실행 • 공간적 특화거리, 정책적 관리지역등 • 도시재생, 공공환경디자인 등 연계추진 검토
대상지 선정	• 주민협의체의 잠재적 추진역량이 높은 지역 • 사업대상지 특성화 및 차별화가 두드러지는 지역 • 특화거리로서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특정구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대상지역 주민공람	•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한 홍보
사업공고	• 시·군 단체장을 통한 사업공고
주민협의회 구성	• 20인 이하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선정	• 정비계획 및 구성 사업자 선정
특성화 계획수립	• 특성화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심의 및 의결	• 광고물 관리 및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사업시행	• 시공사 선정 및 시공시행
사후처리	• 시·군 담당자 관리

표11. 옥외광고 정비 시범사업 추진절차

3.2 유지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

(1) 문제점 및 과제

- 불법 유동광고물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행정력의 한계
 - 고정광고물에 대한 강단단속은 민원 등의 이유로 자제하는 분위기
 - 긴급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도하는 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미비와 경관개선 효과에 한계
 - 강력한 단속이 안되는 이유중에 현실적으로 법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3층이상 건물에 가로간판 제한 등으로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에 한계
- 광고종사자의 등록요건상 전기, 건축, 도장 등의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반영이 되지 않아 경관을 고려한 광고물 디자인에는 한계

합 계	유형별 현황							
1,306,295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 시설물 이용 간판	창문이용 간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95	42	457	8	245	0	19	0
	에드 빌론	공연, 선전탑, 아치등	현수막	입간판	에어 라이트	벽보	전단	기타
	0	33	285,756	4,755	2,636	454,462	556,787	300

표12. 충청남도 불법광고물 유형별 현황(2013옥외광고통계)

(2)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상인들의 협조 필수

- 주요 가로로를 중심으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확산해 나감으로서 그 효과를 지속시켜야 함
- 광고주의 인식전환이 없으면, 시범가로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업주들의 자율참여 유도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서는 건물주, 광고주, 제작업체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필요

(3)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범사업 확대 실시

- 기본적으로 법적인 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등 강력한 수단이 있으므로 적극활용(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18조~20조)
- 특성화 구역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 중심가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 기성시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에는 물리적 비용의 한계가 있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의 홍보 및 인식개선에 효과적임

(4) 상인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위한 관리체계 필요

- 단순한 제도개선이나 규제 단속만으로는 간판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

(5) 과태료 등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광고물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활용

- 현행 예산 편성지침상 과태료등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있음
-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로 전환필요
 - 옥외광고물법에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조례개정 필요



그림3. 불법 광고물 단속대상 구역 우선순위

3.3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 7월 풍수해대비 간판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노후간판이 주 점검대상이며, 기타 현수막 게시대, 전기 이용간판 등이 이에 포함되며, 안전행정부에서 배포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을 안전점검 매뉴얼로 준용함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안전행정부	보 도 자 료 2013년 7월 8일(월) 조간 (7.7.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과	지역활성화과
		담당자	과 장 고광완 사무관 김용권
		연락처	02-2100-2811 02-2100-1765

안전한 거리, 안전한 간판!
- 안행부,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지난 2012년 '산바'가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었을 때, 경기도 동두천에서 마트 간판이 떨어져 이곳을 지나던 몽골인 A씨가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난 2010년 태풍 콘파스가 왔을 당시, 모 회사 보안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주변 도로를 순찰하던 중 근처의 모 상점에서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 ☐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떨어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 2012년에도 모두 1,565건의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계획'을 시달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림4.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안전행정부 배포-참고자료)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1.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 ☐ **점검대상** : 인구 밀집지역의 모든 광고물(불법광고물 포함)
- ☐ **점검방법 및 내용**
 - 시·군별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및 권역별 책임담당자 지정
 -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 구성·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 실시
 - 옥외광고협회(시군구 지회) 등과 합동으로 자체점검 및 예방 활동시 기본장비, 활동비 등 적극 지원
 -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
 - 불법광고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 ☐ **민간조직의 참여(역할)**
 - **옥외광고협회(시도 및 시군구 지부)**
 - 옥외광고물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 단계별 간판 정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협조
 - 현수막 설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 및 설치자제 협조
 - 태풍 내습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장비를 구비한 옥외광고 업체를 읍면동 단위별로 사전 지정
 - **상가변영회**
 - 소속 상가업주에 대한 간판 안전점검의 중요성 홍보
 - 태풍 복상 등 대비·대응 단계시 상가 업주의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 **업종별 협회**
 - 업종별 설치 간판의 특성을 고려한 소속 업체의 자체점검 확인 유도
 - 요식업자 교육 등 자치단체 주관 각종 업주대상 교육시 간판 안전 점검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홍보 교육

2. 중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요령

① 대비단계 (태풍정보·예비특보발효시)

- ☐ **대상광고물** :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신고배제·불법광고물 중 노후된 간판
 -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중 대형광고물 및 시설 노후로 강풍 대비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간판
 -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광고물
 - 건물의 고층이나 해안가 등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광고물
 - **(유동광고물)** 지정게시대 에 게시된 현수막, 게시틀 설치 현수막, 불법현수막
 - 도로상에 설치되어 강풍시 피해를 줄수 있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 **조치요령**
 - **안전점검 대상간판**
 -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점검·관리의 필요성 및 간판의 상태에 대해 사전 공지하여 응급 정비 유도
 - 태풍 소멸 후 상황 종료시까지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점검순찰 강화
 - **신고대상·신고배제·불법간판**
 -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장조치
 - 태풍주의보 발효시까지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급성 등을 고려 정비 추진
 - 경미한 보수 가능 및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간판 등에 한하여 태풍 내습시까지 철거·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정비 추진
 - **현수막**
 - 지정게시대 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내습전까지 사전 철거토록 조치
 - 사설 게시대 및 게시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 전까지 자진 철거토록 홍보·계도
 - 도로상(가로수, 가로등, 쉼스)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철거 조치
 - **입간판·에어라이트**
 - 태풍 전까지 미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일괄 수거 및 업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② 대응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 광고물 파손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필요성)**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시 사전 철거·보수로 불필요한 광고물의 파손 및 2차 피해 예방 가능
 - 광고물 파손시 철거·복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사전 순찰 강화 필요
- **(조치방법)** 유동인구·차량이 많은 지역, 고층건물 밀집지역, 대형·노후간판 설치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순찰 실시
 - 시군 구, 읍면동 등 행정단위별 구역 및 노선구분 예찰 시행
 - 순찰조는 현장 정비반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대상 광고물 발견시 즉시 보수토록 조치

☐ 파손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대상광고물)** 건축물 외곽 벽면에서 게시틀 및 간판을 고정하는 앵커볼트 파손 등으로 추락 우려가 있는 벽면이용 간판
 - 프렉스 원단 등 간판의 일부가 파손되어 소음발생 및 추가파손 우려 간판
 - 전도의 우려가 있거나, 간판 접합부가 파손된 지주이용 간판
 - 벽면 및 건물에서 추락·전도되어 노상에 방치된 간판
- **(조치방법)** 게시틀 및 앵커볼트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경미할 경우 현장 보수조치, 파손 상태가 심각하면 철거조치
 - 부분 파손으로 추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간판은 파손부분 제거조치
 - 파손부분 제거시 호우로 인한 감전 등 전기안전사고 보수조치 병행
 - 부분 전도된 지주이용 간판은 전도상태, 태풍의 소멸시기 등을 판단하여 보강 및 철거조치
 - 추락·전도된 간판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2차 피해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현장조치
 - 대형광고물로 태풍 내습시 조치가 어려운 대형간판은 추가 파손 방지와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고 차량·보행자 이동 통로 확보

③ 복구단계 (특보해제시)

□ 미복구 간판에 대한 조치

- **(대상 광고물)** 간판파해 상황 및 현지 여건상 태풍 내습 기간 중 철거 등이 어려워 응급 복구한 간판
 -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 및 행정단위별(읍면동) 점검결과에 의한 추가 파손 위험 간판
 - 업소주 및 주민신고 등으로 접수된 파손 위험 간판
- **(조치방법)** 사유 시설물인 간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협의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 추락 후 미철거된 간판은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한 후 업주 등 광고물 관리자에게 자체 처리토록 통보
 - 강풍으로 취약해진 간판의 위험성 등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하여 자체점검 유도

□ 취약간판에 대한 점검 및 계도 실시

- **(대상 광고물)** 노후간판, 고층건물 및 해안가 설치간판, 대형간판 등 강풍에 취약한 간판
 -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아 간판 파손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 **(추진방법)** 취약 간판에 대하여는 광고물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과 지역협회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업주 자체정비 유도
 - 지역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간판 자체점검 유도 및 홍보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 용 자 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에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3.4 옥외광고물 설치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상업지역]

간판유형		설계지침	반영여부
일반	수량	• 총 수량 3개이하(최대4개)의 간판을 설치하였는가?	
	색채	• 적색또는 흑색의 바탕색이 전체의 1/2내에서 계획하였는가?	
	조명	• 광원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 직접 투사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규격	• 간판 규격을 준수하였는가?	
		• 동일 건축물 내 광고물의 규격이 통일되었는가?	
안전	• 간판의 벽면 및 지지대의 체결이 확고한가?		
유형별 간판	가로형 간판	• 1개의 가로형간판을 설치하였는가?(곡각지점 1개추가)	
		• 3층이하에 설치하였는가?	
	세로형 간판	• 4층이상의 건물에 설치하였는가?	
	돌출간판	• 5층이하에 설치하였는가?	
	지주이용 간판	• 보도경계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었는가?	
	창문이용 간판	• 2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였는가?	
	옥상간판	• 3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하였는가?	
	현수막 표시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였는가?	
	공연간판	•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였는가?	
	에드빌론	• 옥상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로 설치하였는가?	
	벽보의 표시	• 지정게시판에 부착하였는가?	
	전단의 표시	• 배부함을 통해 배부되고 있는가?	
	선전탑 및 아치광고 물의 표시	• 10m 이내의 높이로 설치되었는가?	
		• 도로횡단구조시 5m 이상으로 설치되었는가?	
평가			

[주거·공업지역]

간판유형		설계지침	반영여부
일반	수량	• 총 수량 2개이하(최대4개)의 간판을 설치하였는가?	
	색채	• 적색또는 흑색의 바탕색이 전체의 1/2내에서 계획하였는가?	
	조명	• 광원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 직접 투사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규격	• 간판의 규격을 준수하였는가?	
		• 동일 건축물 내 광고물의 규격이 통일되었는가?	
	안전	• 간판의 벽면 및 지지대의 체결이 확고한가?	
유형별 간판	가로형 간판	• 1개의 가로형간판을 설치하였는가?(곡각지점 1개추가)	
		• 2층이하에 설치하였는가?	
	세로형 간판	• 주 출입구에만 설치하였는가?	
	돌출간판	• 3층이하에 설치하였는가?	
	지주이용 간판	• 보도경계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었는가?	
	창문이용 간판	• 1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였는가?	
	옥상간판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현수막 표시	•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였는가?	
	공연간판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에드빌론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벽보의 표시	• 지정게시판에 부착하였는가?	
	전단의 표시	• 배부함을 통해 배부되고 있는가?	
	선전탑 및 아치광고 물의 표시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평가			

[녹지·비도시지역]

간판유형		설계지침	반영여부
일반	수량	• 총 수량 1개이하(최대4개)의 간판을 설치하였는가?	
	색채	• 적색또는 흑색의 바탕색이 전체의 1/2내에서 계획하였는가?	
	조명	• 광원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 직접 투사 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규격	• 간판의 규격을 준수하였는가?	
		• 동일 건축물 내 광고물의 규격이 통일되었는가?	
	안전	• 간판의 벽면 및 지지대의 체결이 확인한가?	
유형별 간판	가로형 간판	• 1개의 가로형간판을 설치하였는가?(꼭각지점 1개추가)	
		• 2층이하에 설치하였는가?	
	세로형 간판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돌출간판	• 1층이하에 설치하였는가?	
	지주이용 간판	• 보도경계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었는가?	
	창문이용 간판	• 1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였는가?	
	옥상간판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현수막 표시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공연간판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에드빌론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벽보의 표시	• 표시를 금지하였는가?	
	전단의 표시	• 표시를 금지하였는가?	
	선전탑 및 아치광고 물의 표시	• 설치를 금지하였는가?	
평가			

부록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시행 2014.7.10.] [충청남도조례 제3915호, 2014.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해당 시 ‧군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8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6. 물가 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3조(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 등에 내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나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의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기준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 ③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 단서·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

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다.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경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3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가. 간판의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영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0.4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7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6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0.6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7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과 이·미용업소 표지 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0.5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0.3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 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0.3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0.4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의 표시는 영 제15조제1호가목·제3호·제4호·제6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불링핀 모형의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부지 안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제3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

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5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영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상변압기함
4. 공공자전거보관대
5. 공중전화부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점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같다)여야 한다.
 -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1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조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

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각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불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와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0.4미터 이내, 세로크기 0.55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0.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0.4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여야 한다.
3. 아치의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 등의 종류
 3.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 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합
3.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7.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8.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제22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3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관련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2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목하는 위원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따르며,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5.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은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나. 한 번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광고물 등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등과 관련하여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 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는 광고물 등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분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일반	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은 3개 이하 - 그 이외의지역은 2개 이하 - 곡각지점은 1개 추가한다.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돌출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1면적 0.36제곱미터의 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일반적 표시방법	-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한 표시 금지 - 빛이나 광선등 벽면 또는 공중에 투사 금지 - 적색 또는 흑색의 바탕색 사용은 전체의 1/2 이내로 제한
	전기사용 표시방법	- 주거환경, 축사, 농작물 재배 지역등 피해예상지역 금지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장애 예상지역 금지
	안전점검 대상	- 건물의 4층 이상인 것 - 한번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현수막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게시시설
종류별	가로형 간판	1업소 1간판 - 가로길이는 해당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한다 - 곡각지점 및 건물 앞면 및 뒷면이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 4층 이상의 건물의 가장 높은층에 입체형으로된 건물명 부착가능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세로형 간판	- 건물의 주 출입구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한다. 4층이상의 건물은 입체형 간판을 가로3m×세로 1/2 이내로 한다. - 판류형의 경우 가로0.6m×세로2m 이내로 한다. -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3m 이내로 한다.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3m, 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이어야 한다. - 가로1.2m, 세로20m(상업지역30m) 이내여야 하고 두께는 0.5m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폭은 0.3m 이내로 한다.
	지주형 간판	1.건물부지안에 설치 【도시지역】 - 업소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 높이는 10m 이내로 한다. 1면의 면적은 10㎡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40㎡ 초과할 수 없다. 【비도시지역】 • 높이는 5m 이내로 한다. • 1면의 면적은 5㎡ 이내로 한다. • 합계면적은 20㎡ 초과할 수 없다. 【공동】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건물부지 밖에 설치 • 2개 이상의 업소 •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일 때 1개 추가 •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4개이상의 업소간판은 1면의 면적 6㎡ 이내로, 3개업소 이하는 1면의 면적 3㎡이하로 한다. • 1개업소 간판의 가로1.5m이내, 세로0.5m 이내로 한다. • 도시지역은 보도경계로부터0.5m이상, 비도시지역은 1m이상으로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	• 천, 종이, 비닐등을 활용하는 경우, 창 및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한다. •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을 활용하는 경우, 2층 이하의 창문이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표시면적은 0.4㎡ 이내로 한다.
옥상간판	• 3층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현수막 표시	• 벽면이용, 지정계시대이용, 지주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한다. • 적색류와 흑색류의 바탕색은 금지한다. • 게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지정계시대는 높이 8m, 가로10m 이내로 한다. • 지주를 이용할 수 있다.
공연간판	•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폭의 1/3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1/4 이내로 한다. •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0.4m 이내로 한다. • 지면으로부터 3m 이상이어야 한다.
애드벌룬의 표시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설치한다. • 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m 이상 50미터 이내로 한다. • 애드벌룬의 직경은 5m 이내로 하고, 크기 7m와 폭 1.2m 이내로 한다.

벽보의 표시	• 지정계시판 및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 가로0.4m, 세로0.55m 이내로 한다.
전단의 표시	• 직접나누어 누거나 건물주출입구등에 배부함을 통해 배부한다. • 가로0.3m, 세로 0.4m 이내로 한다.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의 표시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 도로횡단구조는 도로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어야 한다. • 폭이 20m 이상인도로는 이를 횡단하지 못한다.

표1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 참고 및 인용문헌

- 강원도(2009)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경기도(2008)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 경상북도(2010)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공주시(2012) 공공시설물·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13)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김주석, 이정형, 이현호(200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제도와 운용실태에 관한연구, 건축도시연구원
- 당진시(2012) 색채·옥외광고물·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박영운(2009) 도시문화와 옥외광고디자인정책 예측사
- 박영운·전라남도의회 전문위원(2009) 새로운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디자인 정책과제, 옥외광고학연구
- 박진표(2011)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옥외광고학회
- 보령시(201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서울시(20087)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서준원, 손경주, 안건혁(2007) 공유재로서의 옥외광고물 관리방향 연구,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 안전행정부(2007)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 아산시(2012) 도시경관관리계획
- 안전행정부(2013)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실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 8.7)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 8.6)
- 윤호상, 박천보(2009)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 이경아(2007) 간판시범가로사업의 현황과 향후방향, 옥외광고학회
- 이동현(2007)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와 관리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전라남도(2009)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정희정(2013) 국가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천안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청주시(2012) 옥외광고물 종합관리 기본계획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시행 2014. 7.10)
- 한국옥외광고센터(2013) 옥외광고통계